#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성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19

발의연월일: 2024. 6. 21.

발 의 자:정성호·민병덕·백승아

박희승 · 장종태 · 홍기원

염태영 · 송옥주 · 황 희

이병진 · 윤종군 의원

(119]

### 제안이유

국회는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하여 2021년 8월 성범죄, 군인등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 와 재판을 군이 아닌 민간이 관할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2022년 7월부터 시행한 바 있음.

그러나 최근 '해병대원 순직사건'에서 또다시 외압논란으로 군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일게 된 바, 수직적 상하관계로 사건 의 은폐가 일어나기 쉬운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의 구체적 사건 지휘·감독에 대해서는 서면에 의한 지휘·감독을 명문화하고 군검사의 수사직무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 을 두도록 함.

또한 재판권이 군에 있지 아니한 사건은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 으로 이첩하게 하고, 이첩이 지연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이 군 수사기 관에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사건처리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군 사법정의 실현과 피해자 의 인권보장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주요내용

- 가. 군 검찰의 직무 중 범죄수사 범위에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 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함(안 제37조제1항제1 호).
- 나.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이 검찰사무 중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·감독을 하는 경우 서면에 의함을 원칙화하고, 군검사의 독립 성을 우선 보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(안 제39조의2 신설).
- 다.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건을 관할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함(안 제228조의3 신설).
- 라. 대검찰청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은 재판 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해당 사건의 이 첩을 군검사 또는 군 사법경찰관에 요구할 수 있고,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함(안 제228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#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1항제1호 중 "범죄 수사"를 "범죄 수사(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)"로 한다.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9조의2(지휘·감독의 원칙) ① 제38조와 제39조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·감독은 그 목적과 내용, 이유가 기재되고 지휘·감독자가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한다. 다만, 서면을 작성할 여유가 없는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나 기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지휘·감독을 할 수 있고, 이 경우에도 지휘·감독한 내용을 24시간이내에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휘·감독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②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수사와 공판 진행의 공정성을 위하여 소속 군검사가 제37조제1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.

제2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2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8조의3(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의 처리) ① 군검

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건을 대검찰청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.

- ② 대검찰청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은 각수사기관이 관할하는 사건으로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의 이첩을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,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이첩받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 및 영장의 집행 또는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.
- 1.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
- 2. 영장의 신청·청구 여부 결정이나 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④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,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안 제37조(군검사의 직무) ① 군검사 제37조(군검사의 직무) ① -----는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 이 있다. 1.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및 그 1. 범죄 수사(재판권이 군사법 유지(항소심을 포함한다)에 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 필요한 행위 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 하다)-----1의2. ~ 3. (생략) 1의2. ~ 3. (현행과 같음)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제39조의2(지휘·감독의 원칙) ① <신 설> 제38조와 제39조의 구체적 사 건에 대한 지휘·감독은 그 목 적과 내용, 이유가 기재되고 지 위·감독자가 서명날인한 서면 으로 한다. 다만, 서면을 작성 할 여유가 없는 등 긴급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나 기 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지휘・ 감독을 할 수 있고, 이 경우에 도 지휘・감독한 내용을 24시 간 이내에 서명날인한 서면으 로 작성하여 지휘・감독을 받 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②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 제228조(군검사, 군사법경찰관의 제228조(군검사, 군사법경찰관의 수사) ①·② (생 략)

③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<삭 제>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 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 검찰청.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.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 첩하여야 한다.

- ④ 제3항에 따라 이첩받은 사 << 제> 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 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 및 영장의 집행 또는 집행지휘 를 촉탁할 수 있다.
- 1.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 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
- 2. 영장의 신청·청구 여부 결

장은 수사와 공판 진행의 공정 성을 위하여 소속 군검사가 제 37조제1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 야 한다.

수사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정이나 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⑤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4항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,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<삭\_ 제>

제228조의3(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의 처리) 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 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건을 대검찰청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.

② 대검찰청, 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,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은 각 수사기관이 관할하는 사건으로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의 이첩을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할수 있고,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.

- ③ 제1항에 따라 이첩받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검사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및 영장의 집행 또는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.
- 1.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

   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

   경우
- 2. 영장의 신청·청구 여부 결정이나 영장의 집행을 위하여필요한 경우
- ④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,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